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89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김예지·서천호·주호영

김용태 · 조경태 · 이종배

김상욱 • 박덕흠 • 최수진

장동혁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 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장애예술인들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약 0.8%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분 야에서의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의 경

우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예술인 기간제근로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예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			
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			
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u>6.</u>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5호</u> 까	<u>7.</u> <u>제6호</u>		
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